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“이사감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3. 7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



- 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류○수	99.7.28.	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3 202호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 상담 의무 불이행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이사감

- 4. 공고기간 : 2024. 3. 7. ~ 2024. 3. 21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삼척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김재혁(☎ 033-570-190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